경영유의 사항 공개

1. 금융회사명 :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2. 조치일 : 2022. 3. 17.

3. 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4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문수수료 등 계약 관련 내부통제 강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은 자문용역계약을 운영함에 있어 계약 체결 시 자문기관 선정 기준, 자문보수 산정의 근거, 자문용역 결과물에 대한 평가 기준 등 자문수수료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바

계약 상대방 선정 및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자문용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자문용역과 관련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일임재산 운용역 변경 절차 정비 필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책임운용역 변경시 교체 사유, 변경 예정 책임운용역의 주요경력 등이 기재된 서면을 투자자에게 사전통지 하지 않고 계약서 변경 절차 없이, 이메일로 책임운용역 변경을 통지한 사실이 있는 바

일임재산의 책임운용역 변경시 투자자에 대한 통지 및 계약서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정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주식 대차거래 관련 내부통제 정비 필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은 검사대상기간 중 365건의 주식대차거래를 하면서 대차거래 종목 및 수량, 수수료율 등을 증권회사 담당자와 메신저 및 이메일로만 협의하고 운용사 차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주문 입력 오류 방지 등 대차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바

향후에는 대차거래 종목, 대차수량 등의 착오 입력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대차거래 체결 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거치는 등 대차거래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 있음

(4)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 보완 필요

내규 「대체투자펀드 위험관리규정」에 따르면 사모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정가치 평가 주기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수익자 동의로 평가 주기를 완화할 경우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공정가액 평가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의 책임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명확하게 구현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